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교육법시행령 제71조 및 제112조의8제3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, 제73조, 제81조 및 제92조”로 한다.

제2조중 “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제1항”을 “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